

[2024학년도 출결 규정 및 결석신고서 양식]

< 출석 인정 >

- 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(학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)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“학교를 대표한 경기, 경연대회 참가, 산업체 실습과정 훈련 참가, 교환학습, 현장체험학습”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이수 기간
- 경조사 : ★ 반드시 경조사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와 함께 결석신고서 제출

구분	대상	일수
결혼	형제, 자매, 부, 모	1
입양	학생 본인	20
사망	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	5
	부모의 조부모(증조부모, 외증조부모)	
	부모의 외조부모(진외증조부모, 외외증조부모)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	3
	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	1

- 「학교보건법」 제8조, 「학교보건법시행령」 제22조 및 ‘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’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증빙자료 :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의 서류, (방역당국에서 발송한) 문자통보 내용을 담임교사에게 확인

< 질병으로 인한 결석 >

*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

- 법정 감염병의 경우
격리 또는 전염성의 내용이 표기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제출시 출석인정
- 일반 질병의 경우
 - 1~2일 질병 결석 : 담임과 전화, 문자, 투약봉지, 처방전 등 제출
 - 3일 이상 질병 결석 : ★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제출
(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

< 미인정결석시 방침 >

*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

* 질병으로 인해 결석하였으나 결석신고서 미제출한 경우

- 결석 1일~2일: 유선 연락을 통한 출석 독려
- 결석 3일~5일: 결석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,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 의뢰
- 결석 6일: 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면담 요청
- 결석 7일: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, 면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등

결석신고서

제 학년 반 번

성명 :

위 학생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(하였으므로, 하고자)
결석신고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결석 사유 :

2. 결석 기간 : 202 년 월 일 ~ 월 일 (일간)
(※ 3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)

202 년 월 일

보호자 : (인)

계성초등학교장 귀하

담임교사 확인서

위 사실을 (의사 소견서, 투약 봉투, 보호자 면담,
보호자와 전화 통화, 문자수신)으로 확인함.

* 결석 구분 : 질병(), 미인정(), 기타(), 출석인정()

202 년 월 일

담임교사 : (인)

(담임 소견: 추가 설명 필요시 작성)

결
재

교 감